

제2장

용어편

제1절 | 용어 정비의 원칙

제2절 | 용어 정비의 실제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절 > 용어 정비의 원칙

한글로 표기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쓴다.

한자어의 순화

-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고쳐 쓴다. 다만,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 쉬운 한자어라도 같은 뜻으로 더 널리 쓰이는 쉬운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바꾼다.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다면 널리 쓰이는 적절한 한자어로 순화한다.

전문용어의 순화

-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라도 법령에 있는 용어는 되도록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고쳐 쓴다. 다만, 국민이 평소 거의 접하지 않거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낮은 용어는 무리해서 바꾸지 않는다.

외국어와 외래어의 순화

- 외국어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외국어나 외래어는 쓸 수 있다.
- 어렵거나 전문적인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한글로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원어나 뜻풀이 등 도움말을 함께 쓴다.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정비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차별성이 있는 용어나 권위적인 용어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어문 규정의 준수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는 어문 규정에 맞게 고쳐 쓴다.

정비 용어 목록의 활용

- 이 책의 부록인 [정비 권고 용어] 목록은 그동안 발간된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을 통합하고 최근까지의 정비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제시된 순화어를 참고하되 적절한 순화어가 없으면 다른 용어를 찾아 쓰거나 법 문장의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해서 순화한다.

각 부처 등의 국어 순화 정책에 따른 용어 순화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어 순화 사업에 따라 결정된 순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쓴다.

※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어**법령의 정의·약칭**

- 법령의 정의·약칭을 통해 해당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법령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그대로 쓴다.

특수 분야의 용어

-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용어가 없으면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는다.

사물의 명칭 등

- 사물의 이름이나 정책명 등의 명칭은 그대로 쓴다. 행정기관의 정책명은 지을 때부터 되도록 쉬운 용어로 짓도록 한다.

제2절 > 용어 정비의 실제

1 어려운 한자어

가. 쉬운 말로 고치기

정비기준

-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고칠 것인지는 법령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서 어렵기만 한 한자어로 된 용어는 쉬운 말로 고친다.
- 글자만 같고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와 구별하거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한자는 괄호 안에 쓴다.
-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고유어가 있으면 되도록 한자어 대신 고유어를 쓴다.

개임(改任)하다 → 교체 임명, 교체

- ‘개임하다’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말소리만으로는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렵다. ‘교체 임명’이나 ‘교체’로 바꾸어 쓴다.

예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9호)

💡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뜯다

예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

💡 구거(溝渠) → 도랑

-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라는 뜻의 '구거(溝渠)'는 '도랑' 또는 '구거(溝渠: 도랑)'로 바꾸어 쓴다.

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부의(附議)하다 → 회의(심의)에 부치다

예 1: 회의에 부치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제2항제3호)


예 2: 심의에 부치다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2항제6호)

 사위(詐僞) → 거짓, 속임수

- ‘사위(詐僞)’는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진 ‘거짓’이나 ‘속임수’로 바꾸어 쓴다.

예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 개정 내용 반영 (「건축사법」 제39조의3제1호)

 실사(實査) → 실제조사, 현지조사, 현장조사

- ‘실사’는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검사한다’는 뜻이다. 문맥에 따라 ‘실제조사’, ‘현지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바꾸어 쓴다.

예 1: 실제조사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

→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 개정 내용 반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예 2: 현지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자중(自重) → 물건 자체의 무게, 자체 중량

예

외곽시설은 자중·수압·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

외곽시설은 그 시설 자체의 무게, 수압, 파도 및 토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권고안

💡 잔임기간(殘任期間)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자의) 남은 임기

예 1: 임기의 남은 기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예 2: 남은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기업을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전폐(全廢)된 → 모두 잃은

예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필증(畢證) → 증명서, 확인증, -증

- ‘필증’은 ‘어떤 것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졸업증명서’로 표현하고,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재직 증명서’로 표현하듯이 ‘○○필증’을 ‘○○를 마쳤다는 증명서’의 의미를 지닌 ‘○○증명서’나 ‘○○확인증’ 등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1: 증명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제4항)

※ 위 예시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합격하였다는 증명서’로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다.



예 2: 확인증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개정 내용 반영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1호)

 **필(畢)하다 → 마치다**


예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 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5항)

 **허위(虛僞) → 거짓**


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제7호)

 **회무(會務) → (○○○의) 사무, 업무**

- ‘회무’는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의 뜻 외에 ‘모임이나 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실제 법령에서는 ‘회의’ 자체의 사무보다는 ‘위원회’나 ‘기구(機構)’ 등에 관한 사무 또는 업무로 쓰이므로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바꾸어 쓴다.

예 1: 사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제1항)

예 2: 업무

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제7항)

나. 쉬운 말로 풀어 쓰기

정비기준

-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대체어가 있더라도 그 문장에서 해당 용어만 수정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수정해서 알기 쉽게 풀어 쓴다.

💡 매취사업(買取事業)

→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예

매취사업

→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산림조합법」 제110조제2항제4호)

※ 위 예시에서 '임산물'은 내용에 따라 '제품', '물품' 등으로 쓸 수 있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상 상병기간(傷病期間) → 질병의 치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상병'은 대개 '부상·질병'으로 정비하나, 문장으로 풀어 정비할 수도 있다.

예
 예상 상병기간
 →
 질병의 치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소요되다'도 순화 대상어이므로 '질병의 치유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 순화할 수 있다.

 **차인잔액(差引殘額) →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예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
 →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탈모(脫帽) → 모자를 쓰지 않음**

예
 사진(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매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의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합의간주(合意看做) →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예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다. 축약어 풀어 쓰기

정비기준

-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줄이지 않은 온전한 말로 풀어 쓴다.

💡 폐지·분합 → 폐지·설치·분할·통합, 폐지·설치·분리·합병

예

지방자치단체의 **폐지(廢置)·분합** 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 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10호)

💡 개폐 → 개정 또는 폐지, 개편 또는 폐지

예 1: 개정 또는 폐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

예 2: 개편 또는 폐지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예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균분 → 균등 배분**

 **균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균등 배분하다, 동일하게 나누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다**

예 1: 균등 배분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예 2: 똑같이 나누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

 **풀어 쓰지 않는 경우**

- 한 단어로 굳어진 단어는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국공립, 국내외, 수출입, 임직원, 출입구, 승하차

※ '국공립'을 풀어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공립'으로 쓰지 않고 '국립·공립'으로 쓴다.
 국·공립(×)/ 국립·공립(○)/ 국공립(○)

라. 문맥에 따라 고쳐 쓰기

정비기준

- 같은 용어라도 해당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 이 경우에도 명사나 명사형은 우리말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기간을,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다
 →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세금을) 감면하다

- 범위가 명확한 '기간'이나 '금액'이 대상일 때에는 '늘리거나 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자연스럽게 '가중하거나 경감하다'를 우리말인 '늘리거나 줄이다'로 고쳐 쓴다.
- '처분'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대상일 때에는 '경감하다'를 '줄이다'로 고치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도 않으므로 '경감하다'를 그대로 쓴다.
- '세금'과 어울려 쓰이는 '감면(減免)하다'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한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감면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1: 줄이다

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예 2: 늘리거나 줄이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예 3: 경감하다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예 4: 감면하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부 → 지급, 발급, 교부**

 **교부하다 → 내주다, 주다, 지급하다, 발급하다, 교부하다**

- 문맥에 따라 금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다’로, 등록증, 인증서,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발급하다’로 바꿀 수 있다.
- (돈)을 교부하다 → 지급하다, 내주다, 주다, [명사] 지급, 교부
- (증명서)를 교부하다 → 발급하다, 내주다, 주다, [명사] 발급, 교부
- ‘교부’, ‘교부하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출연금 등을) 교부하다

예 1: 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제2항)

예 2: 발급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

예 3: ‘교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기재하다** →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 (장부에, 대장에, 명부에) 기록하다
→ (전자문서에) 기재하다, 기록하다, 입력하다, 작성하다

- '기재하다'는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로 바꾸어 쓴다.
- 장부, 대장, 명부 등과 함께 쓰일 경우에는 '기록하다'로 바꾼다.
- '전자문서'와 어울려 쓸 때에는 '기재하다, 기록하다, 입력하다, 작성하다' 등으로 문맥에 맞게 쓴다.

예 1: 적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예 2: 기록하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4조제5항)

예 3: 입력하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미달하다** → 미달하다, ~보다 낮다, ~를 충족하지 못하다, ~에 미치지 못하다

예 1: 보다 낮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예 2: 충족하지 못하다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예 3: 미치지 못하다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위 예시에서 ‘사람에 대해서는’은 ‘사람은’ 또는 ‘사람에게는’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병과(併科)하다** → 동시에 부과하다, 함께 부과하다, 병행하다, 포함하다, 병과하다

- ‘처분’이나 ‘조치’의 경우 ‘병과하다’는 ‘함께 부과하다’ 또는 ‘동시(에) 부과하다’로 바꾸어 쓴다.
- 문맥에 따라 ‘병행하다’, ‘포함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형벌’이 포함되는 경우 ‘부과하다’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병과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1: 동시에 부과하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예 2: 병행하다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6호)

예 3: 포함하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제2항)

예 4: '병과(併科)'를 그대로 쓰는 경우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건축법」 제108조제2항)

※ 동음이의어인 '병과(兵科)'는 '병과(併科)'와 구분되도록 한자를 괄호 안에 함께 쓴다.

- 병과(兵科): 보병, 포병, 공병 따위로 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눔. 또는 그 임무.

예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군인보수법」 제9조제3호)

 **이격(離隔)** → 간격, 간격을 두다, 거리, 옮기다, 떨어뜨리다

- '이격거리'에서 '이격'은 '사이가 벌어지다, 사이를 벌려 놓다'의 뜻이고, '거리'도 '떨어진 길이'라는 뜻이다.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격' 또는 '거리'로 바꾸어 쓴다.

예 1: 이격거리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200m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200m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간격'이나 '거리' 등으로만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예 2: 떨어뜨리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마. 설명 붙이기

정비기준

-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운 한자어는 그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 낯선 한자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한자를 먼저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 이 경우 괄호 안에 풀어 쓰는 말은 한자나 원어 병기 방식과 같이 해당 한자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쓴다.

안벽 → 안벽(부두벽)

예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두벽)**·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호)

※ ‘안벽’이 ‘부두벽’을 말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안벽(부두벽)’을 쓰지 않고 바로 ‘부두벽’으로 쓴다.

도막 → 도막(도로 도포막)

예

건조**도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건조 **도막(도로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호)

💡 만곡부 →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예

수면하 배출구는 선저폐수 만곡부 근처의 화물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선박의 해수흡입구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이 재흡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수면하 배출구는 선저폐수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근처의 화물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선박의 해수흡입구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이 재흡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5)

💡 침사지(沈砂池) →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침사지(沈砂池), 저류지(貯溜池)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저류지(貯溜池)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호소 → 호소(湖沼: 호수와 늪)

예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소개2
용어3
문장4
작성례5
어문규정

바. 한자를 같이 쓰기

정비기준

- 한자 병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문맥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동음이의어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한다.
 - ‘차대(車臺)’, ‘실화(失火)’, ‘입목(立木)’ 등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보전(保全, 補填)’, ‘조정(調整, 調停)’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 한자 병기는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다.
 - 「약사법」은 ‘약사(藥師)’와 ‘약사(藥事)’가 여러 번 서로 엇갈려 나오고 있어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각각 구별해서 한자를 병기했다.

고가 → 고가(高架)

- ‘높이 건너질러 가설(架設)한다’는 뜻이 있다고 해서 고가(高架)를 단순히 ‘공중에 설치하는’으로 고친다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도하는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풀어 쓰지 않고 한자를 함께 쓰는 정도로만 고친다.

예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공해대 → 공해대(公海帶)

- ‘공해대’는 일반인에게는 낯선 한자어이지만 항공 분야 관계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용어이다. 이런 경우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예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

사. 바꿀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바꾸기

정비기준

- 같은 말이라도 고유어와 한자어가 각각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 되도록 쉬운 고유어를 쓴다.
- 다만, 한자어가 다른 말과 어울려 복합명사처럼 굳어져 쓰이는 경우에는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연령 → (홀로 쓸 때) 나이

→ (복합명사처럼 쓸 때) 연령

- ‘사람’의 경우 ‘연령’은 ‘나이’로 바꾼다.
- 다만, ‘연령’이 ‘수급연령’처럼 한자어와 어울려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일 때에는 ‘연령’을 ‘나이’로 순화하는 것이 어색하므로 ‘연령’을 그대로 쓴다.

예: 수급연령 → 수급연령(○), 수급나이(×)

예

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저감** → **저감, 줄이기**

 **저감하다** → **줄이다**

- ‘저감하다’는 ‘줄이다’, ‘낮추다’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다만, ‘저감대책’, ‘저감시설’ 등과 같이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일 때에는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고 ‘저감’을 그대로 쓴다.


예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전대** → **전대(轉貸)**

 **전대(轉貸)하다** → **다시 대여하다**

- ‘전대’는 ‘다시 대여하다’로 바꾸어 쓴다.
- 다만, ‘전대 절차’, ‘전대 제한’ 등 다른 한자어와 어울려 쓰일 때에는 ‘전대’를 그대로 쓴다.

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내용 반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아. 한문 투 표현 고치기

정비기준

- 법령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부(與否)’와 ‘유무(有無)’는 한문과 영어의 부가의문문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 우리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 ‘여부’나 ‘유무’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맥을 잘 살펴서 ‘여부’나 ‘유무’가 없으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같이 꼭 필요할 때에만 쓴다.

💡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하는지, 충족하는지 여부

- ‘여부(與否)’는 ‘그리함과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충족하는지’에서 어미 ‘~는지’는 그 자체가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충족하는지’와 ‘여부’를 같이 쓰면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부’를 쓰지 않는다.
- 다만, ‘여부’나 ‘유무’의 결과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여부’를 살려 쓸 수 있다.

예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제4항) ※권고안

💡 승인 여부

- ‘승인 여부’에서 ‘여부’는 ‘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반면, ‘승인’만으로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승인 여부’를 그대로 쓴다.

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3항)

 **타당성 여부, 타당성 유무 → 타당성, 타당한지**

-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굳이 ‘여부’를 쓸 필요가 없다.

예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1항) ※권고안

 **환자의 유무**

- ‘환자의 유무’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뜻인데 ‘환자’만으로는 그런 뜻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환자의 유무’를 그대로 쓴다.

예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법」 제9조제1항)

자. 한자어의 본뜻대로 바르게 쓰기

정비기준

- 한자어의 뜻을 잘못 사용한 것은 바로잡는다.
- 우리말의 조어법(단어를 구성하는 규칙)에 어긋난 어색한 말은 쓰지 않는다.

 **자문하다/자문을 구하다 → 자문하다(○)/자문을 구하다(X)**

- 바른 표현:
 - [질문할 때] 자문하다, 조언을 구하다, 문의하다, 묻다(○)
 - [질문에 대답할 때] 자문에 응하다, 자문에 답하다, 자문에 검토 의견을 내놓다(○)
- 틀린 표현: 자문을 받다/자문을 얻다/자문을 구하다/자문을 요청하다(X)

- 자문(諮問)은 ‘물을 자(諮) 자와 ‘물을 문(問) 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라는 뜻이다.
- ‘자문’ 자체가 ‘묻는다’는 뜻이므로 ‘자문을 구하다’나 ‘자문을 요청하다’라는 말은 ‘질문하는 것을 구하다’나 ‘질문하는 것을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이런 말들은 ‘자문하다’, ‘의견을 듣다’로 고쳐 써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다.2)

예

발주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 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예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현재하다 → (현재) 있다**

- ‘현재(現在)’는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로만 쓰일 뿐, ‘현재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하다’와 같은 동사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현재하다’는 ‘(현재) 있다’로 고친다.

예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현재** 관할구역에 **있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조제1항) ※권고안

2) ‘자문위원’, ‘자문위원회’라는 용어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나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대로 쓰기로 한다.



 **필요있다/필요 있다 → 필요하다, ~할 필요가 있다**

- ‘필요있는’은 어색한 조어이다. 문맥에 따라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으로 고쳐 쓴다.

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필요한 경우**
→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9조) ※권고안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멸실하다/멸실되다**

- ‘멸실하다’를 ‘없어지다’로 바꾸면 ‘멸실 후 잔해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멸실하다’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현저한**

- ‘현저한’을 ‘뚜렷한’, ‘매우 큰’으로 바꾸면 ‘뚜렷이 드러나다’라는 ‘현저한’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현저한’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 양도, 양수

- 한자어와 가장 뜻이 비슷한 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쓴다.

예

양도하다 → 양도하다(○), 양도(讓渡)하다(○), **넘겨주다(×), 넘기다(×)**
 양수하다 → 양수하다(○), 양수(讓受)하다(○), **넘겨받다(×)**

💡 개의(開議)하다

- ‘개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 호선(互選)하다

- ‘호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국어기본법」 제13조제4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상계(相計)하다

- ‘상계하다’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다’는 복잡한 법적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맞계산하다’ 등은 법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므로 ‘상계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2 일본식 용어³⁾

가. 일본식 한자어

정비기준

-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 일본어에서는 한자를 음독(音讀: 음으로 읽는 것)하거나 훈독(訓讀: 뜻으로 읽는 것)한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한자의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는 고유 일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우리의 한자음 그대로 사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되었다.
-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 일본식 한자어라도 바꾸어 사용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면 바꾸지 않는다.

3) 일본어 투 표현 정비에 대한 내용은 문장편 제169쪽 참조.

💡 가도(假道) → 임시 도로, 임시 통로

- ‘가(假)’에는 ‘거짓’과 ‘임시’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임시’의 의미를 띤 ‘가-’는 ‘임시’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순화한 것이 좋은 예이다.⁴⁾
- ‘가처분’, ‘가석방’과 같이 그 자체가 하나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어 쓰이는 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조사·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폐지 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8조제1항)

※ 위 예시에서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은 ‘수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로 고쳐 쓴다.

💡 감안(勘案)하다 → 고려하다

예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5항)

4) 그러나 ‘가설건물(假設建物)’에서의 ‘가설’은 기간적 의미는 물론 형태의 의미도 있으므로 ‘가설건물’은 ‘임시 건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다.

 **노임(勞賃) → 임금**


예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명기(明記)하다 → 명확하게 적다, 명확하게 기록하다**
→ 분명히 적다, 분명히 기록하다


예

골재채취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명(命)하다 →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하다’를 ‘처분을 하다’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말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친다.
- ‘명령하다’는 어감이 너무 강하므로 ‘명하다’를 ‘명령하다’로는 고치지 않는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 ※권고안

 **응(應)하다 →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 ‘(명령에) 따르다, (요구에) 응답하다, (검사를) 받다’로 바꿀 수 있다.
- ‘~에 응하다’가 지시하는 내용을 풀어 쓴다.

- 지시하는 내용을 직접 밝히거나 '따르다' 등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에 응하다'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교섭', '협의', '협상' 등은 서로 의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따르다'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경우 '응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1: 받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역 해제를 받은 사람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 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중전 「검역법」 제14조제2항)

예 2: 지시하는 내용을 풀어 쓴 경우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0조제1항)

예 3: 따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예 4: '응하다'를 그대로 쓰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입회(立會) → 참관, 참석, 참여

- '입회(立會)'는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봄'이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따라 '참관'이나 '참석' 또는 '참여'로 바꾸어 쓴다.
- '참관', '참석', '참여'는 다음과 같이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적절한 순화어를 사용한다.

예 1: 참관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예 2: 참석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참석**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위 예시에서 ‘응해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3: 참여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3항)

- ‘입회(立會)’와 동음이의어인 ‘어떤 모임에 들어가 회원이 됨’이라는 뜻의 ‘입회(入會)’는 ‘가입’으로 순화할 수 있다.

예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세무사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 공부(公簿) → 공적 장부, 공부(公簿), 공문서

- ‘공부(公簿)’는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는 장부’를 말한다. ‘공적 장부’로 순화할 수 있다.
- 법령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공부(公簿)’를 그대로 쓴다.

예 1: 공적 장부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칭은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칭으로 본다.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칭은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칭으로 본다.

(「산림조합법」 제63조제2항)

예 2: ‘공부’를 그대로 쓰는 경우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분(副本) → 부분(副本), 복사본

- ‘부분’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서,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소장과 똑같이 만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과 함께 부분을 상대방 수만큼 제출한다. 고유의 법적 의미가 있는 용어이므로 ‘부분’은 그대로 쓴다.
- ‘부분’이 ‘원본과 같음’의 뜻을 나타내는 직인이나 천공(穿孔: 구멍 뚫기) 등이 없이 단순히 ‘복사한 것’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바꾸어 쓴다.

예 1: ‘부분’을 그대로 쓰는 경우

심사장은 이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신청서 부분(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표법」 제66조제1항)

예 2: 복사본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분**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개정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6항)

필수 정비 대상 일본식 한자어 목록

용어	한자	순화어	용어	한자	순화어
가도	假道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관능검사	官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 • 감각활용검사 • 감각기관활용검사
가료	加療	치료			
가식	假植	임시 식재, 임시 심기, 겹심기			
가필하다	加筆	고쳐 쓰다			
감안(하다)	勘案	고려(하다)			
갑상선	甲狀腺	갑상샘			
개호	介護	간병	구근	球根	구근(알뿌리)
거래선	去來先	거래처	구배	勾配	경사도, 기울기, 경사
건정	鍵錠	잠금장치	구좌	口座	계좌
계기하다	掲記	규정하다, 열거하다	굴삭기	掘削機	굴착기
견습	見習	수습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계리	計理	회계처리	납득하다	納得	수긍하다, 받아들이다
계출	届出	신고	노임	勞賃	임금
고리	高利	고금리	녹비	綠肥	풋거름
고아원	孤兒院	보육원	대합실	待合室	맞이방, 대기실
곤색	紺色	감색	두개골	頭蓋骨	머리뼈
공란	空欄	빈칸	마대	麻袋	포대, 자루
공하다	供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	명기하다	明記	(명확하게/분명히) 적다, 기록하다

용어	한자	순화어	용어	한자	순화어
명찰	名札	이름표	잔교	棧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 •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구름다리 • 부두연결다리
명하다	命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령하다(×)			
미강	米糠	쌀겨			
미불	未拂	미지급			
부락	部落	마을	저리	低利	저금리
분비선	分泌腺	분비샘	전도	前渡	선지급, 미리 지급
불입	拂入	납입, 납부	절취선	截取線	자르는 선
불하	拂下	매각	절취하다	截取	자르다
빙점	氷點	어는점	제전	祭典	행사, 축제
사리	砂利	자갈	주말하다	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사찰	査察	조사	지득하다	知得	알게 되다
시건	施鍵	잠금	지불	支拂	지급
시말서	始末書	경위서	지참	遲參	지각
어분	魚粉	어분(생선가루), 생선가루	청부	請負	도급
어획고	漁獲高	어획량	추월	追越	앞지르기
연돌	煙突	굴뚝	침목	枕木	받침목
엽연초	葉煙草	잎담배	통달	通達	도달
음용수	飲用水	먹는 물, 마시는 물	품신	稟申	건의
응하다	應	(명령에) 따르다, 응답하다, (검사를) 받다, (협상에) 응하다	하구언	河口堰	하굿둑
이서	裏書	서명, 확인, 배서	하청	下請	하도급
일부인	日附印	날짜도장	한천	寒天	우무, 우뭇가사리
입회	立會	참관, 참석, 참여	행선지	行先地	목적지
자	者	• 사람 [사람만 가리킬 때] • 자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	후불	後拂	후지급
잔고	殘高	잔액	흑판	黑板	칠판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나. 일본식 외래어

정비기준

- 일본식 외래어란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본래의 발음에 여러 변화를 겪은 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사용된 것을 말한다.
- 일본식 외래어는 해당 용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고쳐 써야 한다.
- 일본식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썼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 있으면 바꾸어 사용한다.

💡 가성소다 → 수산화나트륨

- ‘가성소다’는 ‘가성(苛性)’과 ‘소다(soda)’의 합성어로, ‘수산화나트륨(水酸化 Natrium)’을 나타내는 일본식 표현이다. ‘가성소다’는 해당 용어의 정확한 명칭과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원어 ‘水酸化 Natrium’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산화나트륨’으로 쓴다.

예

저장 중인 다이아마이트 등의 약포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 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이 오염된 때에는 물 150밀리리터에 **가성소다** 100그램을 녹이고 알코올 1리터를 혼합한 액체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해시키고, 마른 걸레로 닦아낼 것



수산화나트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1호)

※ ‘다이아마이트’는 ‘다이너마이트’로, ‘마루바닥’은 ‘마룻바닥’으로 고쳐 쓴다.

💡 센타 → 센터

- ‘센타’는 원어인 ‘center’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센터’로 고쳐 쓴다.

예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해야 한다.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 타이루 → 타일

- ‘타이루’는 ‘tile’의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타이루’는 받침을 가진 음절 끝에 모음을 첨가해 음절의 수를 늘려서 발음한 것으로, 이는 받침소리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어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타일’로 고쳐 쓴다.

예

작업장 바닥은 타이루,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타일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 일본식 외래어 정비 목록

용어	원어	순화어	용어	원어	순화어
가리	加里	칼륨	바란스	balance	밸런스
가성소다	苛性 soda	수산화나트륨	센타	center	센터
구리스	grease	그리스(grease), 윤활유	스라브/ 슬라브	slab	슬래브
기아	gear	기어, 변속장치	엑기스	extract	추출물, 진액
레자	leather	인조 가죽	타이루	tile	타일
모타	motor	모터	휴즈	fuse	퓨즈
미싱	sewing machine	재봉틀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3 전문용어

가. 전문용어의 뜻과 정비 필요성

- 전문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
- 전문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등이 많은데, 관련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말이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말이므로 법령문에서는 쉬운 말로 고쳐 써야 한다.
-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용어라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용어라면 법령 등 공문서에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고쳐 써야 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나. 전문용어 정비 원칙

- 전문용어의 순화안은 대상 용어의 개념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대체하여 대체어만 보고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용어의 순화안은 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친숙하고 쉬운 용어로 한다.
- 적절한 우리말 대체어가 없는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용어에 뜻을풀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다.
- 의미 전달을 위해 괄호에 설명이나 영문 등 원어를 병기할 경우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병기하며, 영문 등 원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쓴다.
- 전문용어의 순화안도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을 마친 국민이 학교에서 배운 용어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5)

다. 전문용어 정비 유형 및 예시

정비기준

-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할 때에는 다음의 단계별 유형을 참고한다.
- 아래 1)부터 5)까지의 유형 외에 전문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식

대상 용어에 대응하는 알기 쉬운 우리말이 있다면 그 말로 대체한다. 한자어나 외국어 등의 원래 형태에 상관없이 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응결수 → 물방울

예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이거나 **응결수(凝結水)**가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이거나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위 예시에서 ‘천정’은 ‘천장’으로 고쳐 쓴다.

토텔름 → 면도용 파우더

예

차. 남성용 **토텔름(talcum)**

→

차. 남성용 **면도용 파우더**

(종전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 5) 일반 법령용어는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을 마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용어는 전문 분야에서만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 수준으로 어휘 범위를 넓혔다. 이는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표준화 안내서』의 표준화 대상 용어 선정 기준과 맞춘 것이다.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2)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되, 대상 용어를 괄호에 병기하는 방식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대체하되, 한자나 외국 글자 등 원어를 병기하면 그 용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괄호에 원어를 함께 쓴다.

 **에프알피(FRP) → 강화플라스틱(FRP)**

예


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스테인레스’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스테인리스’로 고쳐 써야 한다.

 **드레싱 → 소독(dressing)**


예

육창부위 및 **드레싱** 빈도, 방광훈련 방법, 가족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상담

→

육창부위 및 **소독(dressing)** 빈도, 방광훈련 방법, 가족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상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굴 → 앞굽히기[前屈], 앞굽히기[전굴(前屈)]**

예

전굴, 후굴, 좌굴, 우굴

→

앞굽히기[前屈], 뒤굽히기[後屈], 왼쪽굽히기[左屈], 오른쪽굽히기[右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2)

※ 순화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한글 맞춤법(이 책 제267쪽 참조)에 따라 대괄호를 쓴다.

💡 저질상태 →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底質)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 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제2항)

3) 대상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쉬운 용어를 추가하는 방식

대상 용어를 대체할 쉬운 말이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 빈도가 높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순화어로 바로 대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알기 쉬운 용어를 쓴다.

💡 집수정 → 집수정(물저장고)

예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캡타이어케이블 →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스웨이징(Swaging) → 스웨이징(압축가공)**


예

스웨이징(Swaging) 머신

→

스웨이징(압축가공) 머신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7)

 **트랜스폰더 →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

예

무선항행업무(레이다·**트랜스폰더**·거리측정기·전파고도계)

→

무선항행업무[레이다·**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거리측정기·전파고도계]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

4) 대상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병기한 후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

대상 용어를 대체할 쉬운 말이 없고 원어가 해당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 등으로 원어를 병기하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첨포시험** → **첨포시험(貼布試驗: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원인 추정 물질을 몸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예

인체 **첨포시험(貼布試驗)** 자료

→

인체 **첨포시험(貼布試驗: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원인 추정 물질을 몸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자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바목)

 **적응증** → **적응증(適應症: 적용 대상 질병이나 증상)**


예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진단용 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적용 대상 질병이나 증상을 말한다)**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진단용 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파이핑** → **파이핑(piping: 흠·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


예

댐의 **파이핑(piping)** 및 구조적 균열

→

댐의 **파이핑(piping: 흠·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및 구조적 균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플레어스택** →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예

방제시설은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스크러버 및 **플레어스택**의 처리용량, 고정식 소화설비, 고정식 유해 감지시설, 방류벽 및 비상전원 등 사고예방,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명, 위치 및 성능에 관한 기본사양과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스크러버(scrubber: 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등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적절한 성능과 용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개정 내용 반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5) 대상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쉬운 표현으로 풀어 쓰는 방식

대상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것이 더 알기 쉽고 적절한 경우에는 문장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절연상태 →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

예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 (※권고안)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것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3)

 거선한 →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예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거선(擧船)한 경우

→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라. 분야별 전문용어 정비 목록

1) 건설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공동구	공동구(共同溝: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드잡이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잡는 사람)
소단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
수장재	수장재(修粧材: 내부·외부 장식재)
업라이트	지지대(upright)
일위대가(一位代價)	단위 수량당 단가
조적공사	벽돌쌓기 공사

2) 경제/경영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B/L No.	선하증권번호/선하증권(bill of lading)번호
I/L	수입 승인서(Import License)
유산스	유전스(usance: 기한부 어음)
외화획득률	외화획득률(外貨獲得率: 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조 롯트 번호	제조단위번호
차인부정액	예비비지출요구액
팩터링어음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회수하는 어음)

3) 공업/공학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DSC 인코더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선택호출) 인코더
Scintillation Counter	방사능 측정 계수기
텐터(tenter)	텐터(tenter: 원료를 주형에 맞게 펴는 공정)
동점도	운동점성계수
럽처밸브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
모달(modal)프로그램	모달(modal)프로그램(진동 분석 프로그램)
자분탐상시험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1 소개

2 용어

3 단정

4 작성례

5 어문규정

4) 교통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강제햇치카바	강제해치커버(갑판 아래 짐칸 입구를 강제로 덮는 장치)
밸러스트 콤팩터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보선원	선로보수원
사이드포트	사이드포트(하역을 위한 선체 옆면 출입구)
수밀 격벽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
스파 부이(spar buoy)	원기둥 부표
인터체인지(IC)	나들목(IC)

5) 기계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UV-VIS 분광분석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개스킷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교반장치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
버니어캘리퍼스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앵커	앵커(anchor: 구조물과 지반을 결합하는 정착재)
덤웨이터	소형물품 운반용 승강기
탑재체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

6) 농업/축산/산림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사이로/싸이로/사일로(silo)	사일로(사료 저장고)
삽수(插穗)	삽수(꺾꽂이순)
선발육종	품종개량
용재림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
정지	땅고르기
조사료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
포장시험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활착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7) 의학/보건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ALT값	간기능검사(ALT)값
Child-Pugh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HCV	C형간염바이러스(HCV)
경·비골 이개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공기색전증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비골(腓骨)	종아리뼈
비골(鼻骨)	코뼈
안구진탕증	눈떨림증(안구진탕증)
의사증(擬似症)	의사증(擬似症: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병)
족종골/종골	발꿈치뼈
헤르니아(hernia)	탈장

8) 전기/전자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Plate Reader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
급전선(給電線)	급전선(給電線: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
멀티미터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멀티테스터	전기회로시험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큐비클	큐비클(전기 기기, 수전·변전 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물)
피토크관	피토크관(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9) 정보통신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ARS	자동응답시스템(ARS)
PDA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URL	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URL)
VAN	부가가치통신망(VAN)
R&D	연구·개발
리더기	판독기
호스팅	호스팅(hosting: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1
소개2
용어3
단장4
작성례5
어문규정

10) 해양/수산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밸러스트수	평형수(밸러스트수)
버큘탱크로리	진공탱크로리
빌지킬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선가대(船架臺)	선가대(船架臺: 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채니기	채니기(採泥器: 바다 등의 바닥에서 모래 등 침전물을 긁어내는 장비)
청항선	청항선(淸港船: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
폰툰부선	폰툰부선(pontoon 解船: 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부선)

11) 화학/공업 분야

대상 용어	정비안
PCB	폴리염화비페닐(PCB)
SCR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
TEQ	TEQ(독성 등가치)
T-N	총질소(T-N)
강열잔분	강열잔분(強熱殘分: 검체를 세게 가열할 때 휘발하지 않고 남는 물질)
공시험(空試驗)	공시험(空試驗: 본실험과의 대조를 위해 같은 조건에서 분석대상 성분을 제외한 실험)
데시케이터	데시케이터(desiccator: 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

4 외래어와 외국어

가. 외래어와 외국어의 순화 및 정비

정비기준

-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⁶⁾
- 순화어를 만들어 쓸 때에는 국어 조어법을 준수한다.
- 외국어는 대응되는 우리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
- 한글 외에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때에는 괄호 안에 쓴다.
- 널리 알려진 용어여도 원어로 적을 경우 그 의미나 읽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한글로 적는다.

헬멧(helmet) → 안전모

- ‘헬멧’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안전모’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다.

예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헬멧·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안전모·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

6) 이 책에서는 국어사전 등재 여부에 따라 등재된 용어는 외래어, 등재되지 않은 용어는 외국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등재되었더라도 ‘퍼걸러(pergola)’ 같은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법령에 쓸 수 없고, ‘콘서트’ 같이 ‘연주회’나 ‘음악회’ 등 쉬운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용어를 법령에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의 구분보다는 해당 용어의 난이도나 우리말 대체어 유무를 기준으로 해당 용어의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인텔리전트(intelligent)** → **지능형**

 **헬스케어(health care)** → **건강관리**


- ‘인텔리전트’, ‘헬스케어’는 모두 외국어이다. 각각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아 쓴다.

예

인텔리전트 퍼스널 헬스케어 기기
 →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외래어나 외국어를 바꾼 우리말이 생소하거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 순화어만 제시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순화어와 함께 괄호 안에 그 용어의 한글 표기를 적거나 원어를 적을 수 있다.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예

호버크래프트
 →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예인훅(曳引 hook)** → **예인용 고리(hook)**


예

예인훅
 →
 예인용 고리(hook)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 외래어나 외국어의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외래어나 외국어를 먼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7) 문장부호 쌍점(:)의 사용 기준은 제264쪽 참조.


 부지(Bougie) → 부지(bougie: 확장기)

예
부지(Bougie)
→
부지(bougie: 확장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2)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예
모터 그레이더
→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 외국어를 간략하게 줄인 약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있으면 쉬운 우리말을 먼저 쓰고 약어는 괄호에 적는다.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 자동응답시스템(ARS)

예
ARS
→
자동응답시스템(AR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RPM미터(revolutions per minute) →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예
RPM미터 5대 이상
→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5대 이상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

-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을 때에는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예시와 같이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예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 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시 유의사항

-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1.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자모만으로 쓴다.
2. 하나의 음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3.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4. 파열음(ㅂ, ㄷ, ㄱ 계열의 자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미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를 참고한다.
 [예: 핀셋(pincette), 카세트(cassette): 뒷부분의 자모나 발음기호가 같지만 우리말 표기는 ‘셋’과 ‘세트’로 다름]

1)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사이렌 → 사이렌

예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예외로 된소리를 쓸 수 있는 경우

- 위의 기준과 달리 일본어, 중국어 등에는 ‘쓰나미’ ‘마오쩌둥’과 같이 된소리 표기가 일부 허용된다.
- 또 2005년부터는 태국, 베트남 등지의 언어 표기에 대해 ‘푸켓’ ‘호찌민’처럼 된소리 표기를 쓰기로 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음운체계가 우리나라와 같이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세 체계(ㅂ/ㅃ/ㅆ, ㄱ/ㅋ/ㆁ, ㄷ/ㅌ/ㅍ, ㅈ/ㅊ/ㅍ)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받침에는 일곱 글자(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

- ‘ㅍ’ 대신 ‘ㅂ’으로, ‘ㅌ, ㄷ, ㅈ’ 대신 ‘ㅅ’으로 쓴다.
- 짧은 모음 다음의 끝소리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coffee shop’을 우리말 소리로 옮기면 [커피숍]이고, ‘diskette’은 [디스켓]이지만, 받침에는 일곱 글자만 쓰므로 ‘-숍’, ‘-켓’으로 쓴다.

예

coffee shop [kɔfi ʃɔp] → 커피숍
diskette [disket] → 디스켓

3) ‘ㅈ, ㅊ’ 다음에는 이중모음(ㅑ, ㅕ, ㅛ, ㅟ 등)을 쓰지 않는다

- 우리말은 ‘ㅈ’과 ‘ㅊ’ 뒤에 오는 ‘ㅑ, ㅕ, ㅛ, ㅟ’와 ‘ㅑ, ㅕ, ㅛ, ㅟ’의 발음이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ㅑ, ㅕ, ㅛ, ㅟ’ 한 가지로 적는다.

예

juice → 주스(○), 쥬스(×)
television → 텔레비전(○), 텔레비전(×)

- 그러나 ‘슈퍼마켓’, ‘튕튕’ 등 ‘ㅈ, ㅊ’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에 이중모음을 쓸 수 있다.

4) 이중모음 [ou]는 ‘ㅛ’로 표기한다

예

불도우저 → 불도저
로우더 → 로더
로울러 → 롤러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5) 어중의 [i]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앞에 올 때에는 ‘르’로 적는다

예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6) [f], [p]는 ‘ㅍ’으로 표기한다

예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중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 틀리기 쉬운 외래어·외국어 표기 목록

대상 용어	순화어	대상 용어	순화어
데이타	데이터	알콜	알코올
룩스	럭스	오리지널	오리지널
맛사지	마사지	칼라	컬러
메뉴얼	매뉴얼	컨텐츠	콘텐츠
바베큐	바비큐	케비넷	캐비닛
밧데리	배터리	콘베이어	컨베이어
브라켓	브래킷	콘테이너	컨테이너
스노우	스노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
스테인레스	스테인리스	택	태그
심볼	심벌	프리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싱가폴	싱가포르	휴즈	퓨즈

☑ 외국어 정비사례 목록

대상 용어	순화어	대상 용어	순화어
논슬립	미끄럼 방지장치	업로드	자료전송
다운로드	내려받기	오일펜스	기름막이/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Oil Fence)
다크네이비	진남색	이메일	전자우편
대표브랜드	대표상품	인프라	기반/기반시설
리더기	판독기	카테터	도관
리스크관리	위험 관리	커버류	덮개류
메이크업	화장·분장	타운	마을
스커트	치마	파이프라인	송유관
시멘팅을 하다	시멘트를 바르다	팜플렛	소책자
아쿠아리움	수족관	하이픈	붙임표(-)
아쿠아슈즈	수중용 기능성 신발	헬멧	안전모
안전펜스	안전울타리	화이버보드	섬유판(파이버보드)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다. 법령 이름 속의 외국어

정비기준

- 법령 이름에는 되도록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외국어나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으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부득이하게 외국어 원어를 써야 할 경우라도 법령 이름에는 쓰지 않고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쓴다.

심사 과정에서 법령 이름에 쓴 외국어가 정비된 사례

커버드 본드	→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⁸⁾
금융허브(hub)	→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홈리스(homeless)	→ 노숙인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⁹⁾

법령 이름에 외국어를 쓴 사례¹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러닝’은 ‘전자학습’이라는 순화어가 있으나, ‘이러닝’이 널리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법령 이름으로 보인다.
- 외국어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대체할 순화어가 없어 법령 이름에 외국어를 썼는데, 외국어 원어는 이 법의 정의규정에서 괄호 안에 병기했다.

8) 법 제정 시 입안 단계에서 부처와 관계자들은 ‘커버드 본드’를 제명과 조문에서 그대로 쓰기를 원했으나 외국어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조문의 정의에서만 원어를 병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9)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랑인·노숙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 명칭으로 ‘홈리스’를 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2011년 ‘노숙인 등’으로 개정되고 2011년 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0) 의원입법 등의 이유로 법령 이름에 외국어가 쓰인 사례가 생겼고 그 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외국어 법령 이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e-learning이 ‘온라인학습’이란 의미가 있는 프랑스어 ‘apprentissage en ligne’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개념과 연관이 있는 어휘를 이용하여 프랑스어로 정의하고 명명함으로써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원어(외국 글자) 표기 시 대문자·소문자 사용법

정비기준

- 로마자는 대문자·소문자를 구분해서 쓰면 법령문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글자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구별이 쉽기 때문이다.
- 대문자·소문자의 표기는 예외가 있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1) 대문자·소문자의 구분

가) 용어를 원어로 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쓴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스미스골절(smith fracture)
- 패스트 로프(fast rope)

나) 약어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그러나 법령문에 약어를 쓸 때는 약어만 쓰면 안 된다. 그 의미나 읽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먼저 한글을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함께 쓴다.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DB)
- 간기능검사 - 간기능검사(ALT)
- 조류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AI)

2)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만 써야 하는 경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체계나 기호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표준 규범을 사용한다.

-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Units)¹¹⁾

단위기호	이름	양	단위기호	이름	양
A	암페어	전류	m	미터	길이
cd	칸델라	광도	mol	몰	물질량
K	켈빈	온도	s	초	시간
kg	킬로그램	질량			

11) 별표나 별지 서식에서는 단위기호를 쓸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알기 어려운 기호는 단위기호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글을 함께 적는다. 예) cd → cd(칸델라)

- 원소기호와 한글 표기¹²⁾

원소기호	한글 표기(기호)	원소기호	한글 표기(기호)
Al	알루미늄(Al)	Mn	망간(Mn)
As	비소(As)	Ni	니켈(Ni)
Cd	카드뮴(Cd)	Pb	납(Pb)
Co	코발트(Co)	Se	셀레늄(Se)
Cu	구리(Cu)	Zn	아연(Zn)
Li	리튬(Li)		

5 차별적·권위적 용어

- 특정 집단이나 계층,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가. 차별적 용어의 정비

정비기준

- 성차별적인 용어,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장애인을 비하(卑下)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1) 성차별적 용어

자(子) → 자녀

예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 ※2015년 국회제출안

12) 원소기호의 한글 표기는 법령에서 개정된 사례만을 모은 것이다.

2) 특정 직업군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

 강사료 → 강의료, 강사의 강의료

- '강사료'는 직업명과 비용을 합성한 용어로,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성을 지닌 용어이다.


예

강사료와 수당

→

강의료와 수당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8제5항제1호)

 파출부 → 가사도우미

- '파출부'는 직업과 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사회적 차별 용어이다.

예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

청소 및 가사도우미 관련직

(종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3)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

 불구자 → 신체장애인, 장애인


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6호)

 **농아자 →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농아자’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법조문에서는 선택적 의미로도 ‘농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순화할 때 문맥을 보고 순화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제223조(농아자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3조)

 **불구폐질 → 영구장애**

예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영구장애**,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호)

 **장애자 → 장애인¹³⁾**

예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13)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은 비하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이다.

☑ 장애 관련 필수 정비 대상 용어 목록¹⁴⁾

대상 용어	개선 용어	대상 용어	개선 용어
간질	뇌전증	맹인	시각 장애인
간질병자	뇌전증 환자	불구	(신체) 장애인
농아	청각 및 언어 장애	불구자	(신체) 장애인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정신병자	정신질환자

4) 그 밖의 차별적 용어

💡 혼혈아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3호라목)

💡 사생아 → 혼외자녀

-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혼외자녀’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한다.

14) 2014년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률에서 사용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차별적 용어를 발굴하여 일괄 개정하였다.

나. 권위적 용어의 정비

정비기준

-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어감을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용어, 권위적인 용어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시달 → 지시, 전달, 통보

-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하거나 통지한다는 의미로 ‘시달하다’를 사용하는데, 경직된 어감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쓴다.

예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제2항)

💡 **임검** → **현장조사, 현장검증**

- ‘임검(臨檢)’은 ‘검사에 임한다’, ‘검사한다’는 의미인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를 위계에 의해 구분하는 권위적인 어감이 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을 의미하는 ‘현장조사, 현장검증’ 등으로 순화하여 쓴다.

예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2호)

💡 **징구하다** → **내게 하다, 받다**

- ‘징구’는 ‘돈이나 서류 따위를 내게 요구하다’는 의미인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하면서도 강압적인 어감을 준다.
-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위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므로 ‘내게 하다’, ‘받다’ 등으로 적절하게 순화하여 쓴다.

예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매입필증’은 ‘매입증명서’ 또는 ‘매입확인증’으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¹⁵⁾

💡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 ‘통할하다’는 ‘모두 거느려 다스리다’의 뜻을 가진 말로서 권위적인 어감이 있다. 지휘 통솔의 목적이 강한 조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상적인 표현인 ‘총괄하다’로 바꾸어 쓴다.

예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15) 제15쪽 ‘필증’ 참고

6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등

가. 관용적 표현

정비기준

- 법령문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 온 ‘상당하다’, ‘내지’, ‘~라 함은’, ‘~에 의한’, ‘~하지 아니하다’ 등의 한자어나 옛말 투는 일상에서 쓰는 쉽고 간결한 용어나 표현으로 바꾼다.
-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용어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을 때에는 그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밝혀 쓴다.
-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옛말 투나 번역 투 표현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쳐 쓴다.

💡 상당(相當)하다 → 적절하다, 타당하다, 해당하다, 상당하다

- ‘상당하다’는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꽤 많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법령에서는 ‘적절하다’, ‘상응하다’, ‘타당하다’, ‘해당하다’, ‘합당하다’의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이므로 조문에 따라 일상적인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쓴다.
- 다만, ‘일정한 금액,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 또는 ‘꽤 많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일상에서도 ‘상당하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쓴다.

예 1: 적절한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예 2: 타당하다고

신고의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예 3: 해당하는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 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채권이 금전을 대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변제받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84조) ※권고안

예 4: 일정한 정도에 이르다 → '상당하다'를 그대로 쓴다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상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예 5: 적지 않은, 꽤 큰 → '상당하다'를 그대로 쓴다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당해(當該) → 해당, 그**

- '당해'는 법령문 외에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이다. 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이나 대상에 해당됨을 나타낼 때에는 '해당'이나 '그'로 바꾸어 쓴다.
- 지시하는 내용이 문장에 나온 후 '당해'가 나올 때에는 '그'로 바꾼다.
- '그'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그'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보다는 '해당'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1: 해당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예 2: 그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6항) ※권고안

 내지(乃至)

- ‘내지’는 국어사전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이다. ‘또는’이라는 의미 외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일 경우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는 의미도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다.
- ‘또는’의 의미로 쓴 ‘내지’는 ‘또는’으로 바꾸어 쓴다.
- 법령문에서 조 번호 등과 어울려 쓰는 ‘내지’는 ‘~부터 ~까지’, ‘~부터 ~까지의 규정’, ‘~ 이상 ~ 이하’ 등으로 명확하게 쓴다.
- 조 번호와 어울려 쓴 ‘내지’
 - 원칙: ‘~부터 ~까지’ 다음에 ‘~의 규정’을 붙여서 뒤에 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 예외: ‘~부터 ~까지’가 열거되는 조문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의 규정’을 붙이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규정’을 붙이지 않는다.

예

- | | |
|---|---|
|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 제2항 부터 제4항 까지 의 규정에 따라 |
|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 → 제3항 부터 제5항 까지 및 제7항에 따라 |
|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 → 제5조 부터 제7조 까지 ,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부터 제20조 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 해당 인용조항의 범위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까지 명시해야 한다.

- | | |
|--|--|
| 제5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 → 제5조 부터 제9조 까지 ,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부터 제7항 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계급과 어울려 쓴 ‘내지’

예

대통령경호실의 **1급 내지 4급** 경호공무원

→

대통령경호실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3호)

• 축척과 어울려 쓴 ‘내지’

예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권고안

• 기간과 어울려 쓴 ‘내지’

예


第31條(授業年限) ① 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

 기타(其他)

- ‘기타’는 ‘그 밖의 또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주로 ‘앞말이나 앞 문장과 대등한 것이 또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
- ‘기타’는 다음에 오는 말의 수식 범위에 따라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형어(그 밖의)의 역할을 하거나, 이어지는 절을 수식하는 부사어(그 밖에)의 역할을 한다. ‘그 밖의’를 쓸지 ‘그 밖에’를 쓸지는 문장에서 수식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 ‘기타’ 다음에 오는 말이 길어질수록 ‘그 밖의’보다는 ‘그 밖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 ‘기타소득’처럼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쓴다.

• 기타+명사 → 그 밖의

-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 명사가 바로 오고, 그 명사를 꾸며줄 때 쓴다.

예
 상업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인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명

예
 중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 그 밖의 외국인

| 예외 |

- ‘기타’ 뒤에 바로 명사가 오더라도 ‘기타’가 그 명사를 꾸며주지 않을 때에는 ‘그 밖의’를 쓰지 않는다. 이 경우 문장 전체와 호응하는 부사어 ‘그 밖에’를 쓴다.

- 다음 예시에서 ‘기타’ 뒤에 명사(위원회)가 왔지만 명사 ‘위원회’와 호응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예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타+형용사/동사+명사 → 그 밖의

- ‘그 밖의’가 바로 뒤에 오는 형용사나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 형용사나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줄 때에는 ‘그 밖의’를 쓴다.

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예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타 + 형용사 + 명사’의 구성이지만 ‘그 밖의’로 쓰지 않고, 관용어처럼 ‘그 밖에’를 쓴다.¹⁶⁾

16)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원래 모습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였다. 그런데 ‘위원회에 관하여’는 없어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원래의 문장구성으로 보면 ‘그 밖에’를 쓰는 것이 사실은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그 밖에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처럼 마지막 항에 쓰이는 “그 밖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나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으로 구체적으로 쓴다.

- 기타+절/동사구+명사 → 그 밖에
- ‘그 밖에’는 뒤에 ‘절’이 올 때도 쓴다.

예

도로·공원·철도·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기타소득 → 현행 유지
- 「소득세법」,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을 구분하기 위한 특정 명칭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 자(者) → 사람, 자

- 법령에서는 ‘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의 법인격을 가진 명칭으로 쓰인다.
- ‘자’나 ‘사람’ 모두 ‘자연인’인 ‘사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지만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쓴다.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쓴다.

예 1: ‘사람’만을 가리키는 경우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66조)

예 2: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 인(人) → 명

- ‘명’은 사람을 셀 때, ‘인’은 사람을 셀 때나 한자어 수와 함께 쓰이는 명사이다.
- ‘명’이나 ‘인’ 모두 사람을 세는 단위로 쓸 수 있지만, 법령문에서는 사람만을 세는 단위명사로 ‘명’을 쓰고,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할 때는 ‘자/사람’의 구분처럼 ‘인’을 쓰기로 한다.
- ‘위원 3인’처럼 ‘인(人)’이 홀로 단위명사로 쓰일 때에는 ‘명’으로 바꾸어 쓴다.
- 그러나 2인승, 3인분, 5인 가족 등과 같이 굳어진 표현은 그대로 쓴다.

예 1: ‘사람’만을 가리키는 경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예 2: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1항)

예

10인(×), 10명(○), 2인승(○), 3인분(○), 5인 가족(○)

💡 제○조의 규정에 의하다

- ‘~에 의한/의하여/의한다’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꾼다.¹⁷⁾
- ‘규정(規定)’은 ‘그 정하여 놓은 것’을 뜻하는 말인데 ‘제○조’에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에서와 같이 ‘규정’을 생략하면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에는 ‘규정’을 그대로 살려 쓸 수 있다.

17) ‘의하여’가 방법이나 수단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으로’ 등으로 바꾼다. 다만, ‘의하여’를 ‘~으로’로 바꾸었을 때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자세한 내용은 제193쪽 참조)

예	
제○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에 따른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제○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조에 따른다

예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라(이라) 함은 → ~란(이란)

- 정의 규정에서 쓰는 ‘~(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에서 ‘~(이)라 함’의 ‘함’은 ‘말함’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서술어가 중복되어 어색하다. ‘~란 ~을/를 말한다’로 고쳐 쓴다.

예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2.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권고안

💡 ~함에는 → ~할 때에는, ~하는 경우에는

예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4조제1항) ※권고안

 **때**

- ‘~한 때’와 ‘~하는 때’는 ‘~하였을 때’, ‘~할 때’로 바꿔 쓴다.
- 과거의 법령문에서 ‘~한 때’와 ‘~하는 때’ 두 가지 표현이 주로 쓰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 ‘때’라는 명사는 ‘~ㄴ/을’ 형의 관형어와 호응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의 조건절에서) ‘~한 때’와 ‘~하는 때’로 쓰는 것은 자연스럽게 않다.
- 다만,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에는 ‘~한 때’나 ‘~하는 때’를 쓸 수 있다.

현행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경우**

- ‘경우’는 앞에 오는 말의 어미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한 경우’, ‘~하는 경우’와 ‘~할 경우’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설치할 때, 설치하는 경우**

→ **체결하였을 때, 체결한 경우**

→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경우**

(「방송법」 제80조) ※권고안

나. 조사

정비기준

-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조사’는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 불필요하게 사용된 복합조사(둘 이상의 조사가 모여서 된 조사)는 삭제하거나 문맥에 어울리는 다른 조사로 고쳐 쓴다.

1) 조사

💡 ~이/가 정하는 → ~에서 정하는, ~(으)로 정하는

- ‘대통령령/~부령/정관’ 그 자체는 행위 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없는 비인격체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사물을 주어로 하여 ‘대통령령/~부령/정관이 정하는’ 같은 어색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 법률의 경우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하는, 이 법에서 정하는’으로 쓴다.
-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은 해당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이므로 ‘~으로 정하는’을 쓴다.

법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	법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통령령/부령/총리령이 정하는	→	대통령령/부령/총리령으로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	조례로 정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 경우를 제외한다 → 경우는 제외한다

- 주로 단서나 괄호에서 예외를 표현할 때에는 앞서 말한 것과 다름을 드러내는 경우이므로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으로 고쳐 쓴다.

예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예/에게

- ‘에’와 ‘에게’는 여격(與格) 조사로서 앞말이 어떤 행동/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앞말이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에’와 ‘에게’를 구별해서 쓴다. 즉, ‘나무에 물을 준다’와 ‘운동선수에게 물을 준다’에서처럼 앞말이 사물[무정명사(無情名詞)]일 때에는 ‘에’를 쓰고, 앞말이 사람·동물[유정명사(有情名詞)]일 때에는 ‘에게’를 쓴다.¹⁸⁾
- (기관, 단체)에게 → ~에
- 기관이나 단체는 무정명사이므로 ‘에게’를 쓰지 않고 ‘에’를 써야 한다.

예 1: 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30조제5항) ※권고안

예 2: 에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4조제3항) ※권고안

- 기관에게 → 기관으로 하여금
- 사역(使役)의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로 하여금’으로 바꾼다. 이때 뒤에 오는 동사를 ‘~하도록/~하게’의 형태로 쓰면 행동을 시킨다는 의미가 명확해진다.
- 다음 예시와 같이 ‘지원기관에’를 쓰면 ‘지원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으므로 사역 표현을 쓴다.

18) 무정명사(無情名詞)는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이고, 유정명사(有情名詞)는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예 3: ~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물류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항) ※권고안

- 사업자, 시행자 등 ‘○○자’에 대하여 → ○○자에게
- ‘사업자’, ‘시행자’, ‘신청인’ 등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자(者)/-인(人)’이 붙은 용어는 ‘사람’으로 보고 ‘에게’를 쓴다.

예 4: 에게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권고안

2) 복합조사

 **까지에** → ~까지, ~ 시점까지, ~ 시까지

- 조사 ‘까지’와 ‘에’를 합성하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에’를 삭제한다.
- 문맥에 따라서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시점을 추가할 수 있다.

예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 **혼인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 **혼인 성립 시까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829조제4항) ※2015년 국회제출안



 **즉시로, 즉시로부터¹⁹⁾ → 즉시, 바로 그때부터**

- ‘즉시’는 그 자체로 부사어로 쓰인다. 따라서 ‘즉시’를 ‘즉시로’나 ‘즉시로부터’와 같이 조사와 결합하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제3항) ※권고안

예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시(時), 분(分) 또는 초(秒)로 정한 경우에는 **바로 그때부터** 기산(起算)한다.
(「민법」 제156조) ※2015년 국회제출안

 **공직으로부터 → 공직에서**

- ‘로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이나 다음 예시에서 ‘공직으로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문맥에 적절한 조사로 수정한다.

예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4항) ※권고안

 **처음으로부터 → 처음부터**

- 조사 ‘부터’만으로도 시작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

예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제2항) ※2015년 국회제출안

19) ‘로부터’는 격조사 ‘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조사로서,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다. 숫자²⁰⁾

정비기준

- ‘1, 2, 3...’은 아라비아숫자, ‘일, 이, 삼...’은 한자어 수사, ‘하나, 둘, 셋...’은 고유어 수사이다.
- 부자연스럽게 쓴 아라비아숫자를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²¹⁾

1) 숫자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둘

예
2 이상의 필지 → **둘** 이상의 필지

2) 숫자의 표기

- 법령 본문에서 수는 만, 억 단위로 한글을 넣어 주되, 마지막 천 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때에는 ‘천’도 한글로 쓴다.
- 수식은 아라비아숫자를 쓴다.
- 별표나 별지 서식에서는 아라비아숫자를 주로 쓴다.

12억3456만7500원 (○) 350백만원 (×) 3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
700미터 (○) 5만2천미터 (○)

20) 숫자와 어울려 쓰는 단위명사는 숫자와 붙여 쓴다. 숫자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는 제253쪽 참조.

21) 일반적으로 적은 수효를 셀 때에는 ‘강아지 두 마리’처럼 고유어를 쓰지만, 수가 커지면 ‘강아지 오십 마리’처럼 한자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 수(數)

- ‘수(數)’는 ‘몇, 여러, 약간’의 뜻을 가진 말로서 ‘수십, 수백’과 같이 접두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 킬로미터’처럼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수개’, ‘수죄’ 등 어색한 조어는 자연스러운 말로 풀어 쓴다.
 - 수개 → 여러, 여러 개
 - 수인 → 여러 명(사람만 포함되는 경우), 여럿(단체나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
 - 수죄 → 죄가 여러 개, 여러 가지 죄
 - 수회 → 여러 차례
- ※ ‘수(數)’는, ‘수십, 수백’과 같이 숫자 앞에 쓸 때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지만, ‘수 킬로미터’처럼 단위나 차례 앞에 쓰일 때는 관형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1: 수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

예 2: 수인

예 3: 수회

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거절증서령」 제7조)

예 4: 수죄

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제2항)

조문의 번호 체계

- 조문 번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한다.²²⁾


1. → 가. → 1) → 가) → (1) → (가)

22) 번호 체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랐다.

 **이었던, 이어야 → 였던, 여야**

- ‘ㅣ’ 뒤에 ‘ㄱ’가 와서 ‘ㅋ’로 준 경우에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준말을 쓴다.

예	
	가입자 이었던 자
[법률/하위법령]	→ 가입자 였 던
	인정된 자 이어야 한다
[법률/하위법령]	→ 인정된 자 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된다, 아니하는, 아니하게**

- 하위법령에서는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않은’, ‘않게’로 사용한다.

예	
	그러 하지 아니하다
[하위법령]	→ 그렇지 않다
	아 니된다/아니 된다
[하위법령]	→ 안 된다

예	
	하 지 아니한 경우
[하위법령]	→ 하 지 않은 경우
	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위법령]	→ 하 지 않게 된 경우

2) 본딴말을 쓰는 경우

 **본딴말 ‘~하여’를 쓰는 경우**

- ‘~하여’가 보조용언 등이 없이 쓰일 때에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하여’의 형태를 유지한다.

- ‘대하여’, ‘위하여’ 등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법률/하위법령]	△△에 관한 제○조를 위반 하여 ~를 한 자(○)
	△△에 관한 제○조를 위반 해 ~를 한 자(×)

예	
[법률/하위법령]	△△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 본딤말 ‘~되어’를 쓰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준말을 쓰더라도 문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 준말은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본딤말로 쓴다. ‘되어’, ‘~되어야’ 등은 문어(문장)에서는 ‘되어’, ‘~되어야’로 더 많이 쓰므로 ‘되어’의 형태를 유지한다.²⁴⁾

예

[법률/하위법령]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마. 통일해서 쓸 용어

정비기준

-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쓴다.

💡 혹은 → 또는

-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반면 ‘혹은’은 한자 ‘혹(或)’과 보조사 ‘은’으로 이루어진 말로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 외에 ‘더러는’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졌다.
- 법령에서 쓰는 ‘혹은’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로 쓰고 있으므로 순우리말인 ‘또는’으로 통일해서 쓰기로 한다.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또는** 노인 등 부양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제1항) ※권고안

24) 일상적으로 ‘했다’의 경우 구어(말)에서 ‘했다’를 주로 쓰지만 문어(문장)에서는 ‘하였다’, ‘했다’ 두 가지를 혼용한다. 반면 ‘됐다’의 경우 구어에서 ‘됐다’를 주로 쓰지만 문어에서는 ‘되었다’를 주로 쓴다. 이처럼 문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 준말은 본래의 형태대로 적기로 한다.


 **같음하다**

- ‘같음하다’를 ‘대신하다’로 고치지 않는다.
- ‘대신하다’는 ‘같음하다’와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고유어인 ‘같음하다’를 굳이 한자어인 ‘대신하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같음하다’를 그대로 쓴다.**

예: ‘같음하다’를 그대로 쓰는 경우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2조제1항)

 **불(\$)** → 달러

- 화폐 단위 중 혼용되고 있는 ‘달러’와 ‘불(弗)’은 ‘달러’로 통일해서 쓴다.


예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제1호)

 **월** → 개월

- ‘월’이 달을 세는 단위로 쓰일 때에는 ‘**개월**’로 고쳐 쓴다. ‘**○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고 하면, 1년 열두 달 중 특정한 달(○월)이 지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기간임을 밝혀 명확히 쓴다.

예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얻다 → 받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얻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
- 종래에 '승인'은 '얻다'와, '면허, 인가, 동의' 등은 '받다'와 어울리는 것으로 써 왔으나, 특별히 구별해서 써야 할 이유가 없고 실익도 없으므로 '받다'로 통일해서 쓴다.
- '의결'의 경우 '받다', '거치다' 등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다.

예

승인을 **얻다** → 승인을 **받다**
 면허를 **얻다** → 면허를 **받다**
 인가를 **얻다** → 인가를 **받다**
 동의를 **얻다** → 동의를 **받다**

✔ 통일할 용어 목록

대상 용어	통일 표현	대상 용어	통일 표현
불(弗)	달리	혹은	또는
월	개월[기간의 단위로 쓸 때]	화상회의	영상회의
얻다	받다	1월말까지/ 6월말까지	1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평방미터	제곱미터		
해외 해외동포	국외 재외동포	2월말까지	2월 말일까지

바. 구별해서 쓸 용어

정비기준

- 말소리가 같은 동음이의어 또는 말소리가 비슷한 용어는 뜻이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결재/결제

-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한다는 뜻이다.
- ‘결제’는 증권 또는 돈을 주고받아 사고파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로서 주로 돈과 관련된 일에서 쓰는 단어이다.

예: 결재

공개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1항)

예: 결제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제1항)

기간/기한

- ‘기간’은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말로 시간적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 ‘기한’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라는 뜻 외에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거나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 실무상으로는 ‘기간’과 ‘기한’의 개념이 사전적·이론적 개념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체로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중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기간’으로,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중점만 정해져 있는 경우를 ‘기한’으로 쓰고 있다.

-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은 ‘연장’으로, ‘기한’은 ‘연기’로 주로 쓰고 있다.²⁵⁾

예: 기간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예: 기한을 연기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기한 내에/기한내에 → 기한까지**

- ‘기한’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를 뜻하므로 ‘일정한 시간적 범위의 안’을 뜻하는 ‘내’보다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까지’와 어울린다.

예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권고안

예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분할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

25) 국회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참조.



 **이내/이상/이하**

• 이내²⁶⁾

- ‘이내’는 명시한 숫자까지 범위를 한정할 때 쓴다.

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제1항)

• ~이상 ~이내/~내지 ~이내 → ~ 이상 ~ 이하

- ‘~ 이상 ~ 이하’는 일정한 숫자에서 시작되어 일정한 숫자까지로 범위를 한정할 때 쓴다.

예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1항)

예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로서/로써**

-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쓰고, ‘로써’는 수단이나 방법, 도구를 나타낼 때다.

- ‘로서’는 예1의 ‘사람’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처럼 ‘로서’에 결합한 명사와 뒤에 오는 내용이 의미적으로 대등한 경우에 쓴다.

- ‘로써’는 재료, 원료, 수단, 도구 등임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을/를 써서’, ‘~을/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 등으로 바꾸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26) 국어사전에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 시간, 거리, 수량 따위를 나타낼 때에 두루 쓴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15 이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5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 1: 자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예 2: 방법

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 문장 해석에서 '자로서' 앞뒤의 선후 관계를 밝혀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를 한 후' 등으로 명확하게 쓴다.

예 3: 선후 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전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적하(積下)/적하(積荷)²⁷⁾

- '적하(積下)'는 '짐을 부림'이란 말로 화물이나 짐 따위를 일정한 목적지에 내림을 뜻한다.
- '적하(積荷)'는 '화물을 배나 차에 실음, 또는 그 화물'이란 말로 쓰인다.
- 동음이의어이면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용어들인데다 문맥상의 의미도 혼동하기 쉬우므로 법령에 쓸 때에는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

예: 적하(積下)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4조)


※ 위 예시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는'은 '승인을 받지 않고는'으로 고쳐 쓴다.

27) '적하(積下)'나 '적하(積荷)'는 둘 다 어려운 용어이므로 되도록 '(화물/짐)을 내리다/신다'로 풀어 쓰도록 한다. 특히 '적하(積荷)'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적하(積貨)'로 쓰거나 '화물 적재'로 쓴다.

예: 적하(積荷)

선박의 가로 방향에 있어서는 선박의 측면에 가깝게 적재할 것. 다만, 가드레일, 불워크(Bulwark)지지대, 도선사의 승선·하선 통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하(積荷) 틈의 어떠한 부분도 선박의 측면에서 선박 너비의 평균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4제3호)

 **해치다/침해하다**

- ‘해치다’는 ‘어떤 상태에 손상을 입혀 망가지게 하다’라는 뜻이다.
- ‘침해하다’는 ‘침범하여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다.

예: 해치다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예: 침해하다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7 어문 규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 원칙인 반듯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²⁸⁾
- 법령문의 간결성·함축성 등을 고려한 오랜 관습은 예외로 일부 허용하되, 최소한으로 한다.

가. 띄어쓰기

1) 법령 이름 띄어쓰기

정비기준

-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이름은 최대 8음절²⁹⁾까지 붙여 쓸 수 있다.
-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단체 또는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예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하위법령임을 나타내는 명칭은 띄어 쓴다.
예시) 아동복지법∨시행령
-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 법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예시) 고용정책∨기본법

28) ‘어문 규정’은 법령문에서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두음법칙, 문장부호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29)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라고 한다.

•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작성 기준일: 2025. 10. 31.)

- 법령 이름이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개정되기 전이라도 아래 ‘권고안’으로 인용한다.
- 법령 이름이 아직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었다더라도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는 법령 이름은 그 법령을 일부개정하거나 전부개정할 때 아래 ‘권고안’에 따라 법령 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한다.
- 법령 이름을 다른 법령에서 쓸 때에는 법령 이름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법령 이름 앞뒤에 홑낫표(「 」)를 붙인다.

현행	권고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國際民事司法共助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현행	권고안
도시V및V주거환경정비법	도시V및V주거환경V정비법
독립유공자예우에V관한V법률	독립유공자V예우에V관한V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V진흥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V보호법
만화진흥에V관한V법률	만화V진흥에V관한V법률
먹는물관리법	먹는V물V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V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V보호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V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민방위V기본법
발전소주변지역V지원에V관한V법률	발전소V주변지역V지원에V관한V법률
범죄수익은닉의V규제V및V처벌V등에V관한V법률	범죄수익V은닉의V규제V및V처벌V등에V관한V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V기본법
보험사기방지V특별법	보험사기V방지V특별법
부정청탁V및V금품등V수수의V금지에V관한V법률	부정청탁V및V금품V등V수수의V금지에V관한V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V기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V진흥법
상법시행법	상법V시행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V육성법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V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V기본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V정비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V위한V시험연구V등에V관한V법률	수산과학기술V진흥을V위한V시험연구V등에V관한V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V육성법
수입식품안전관리V특별법	수입식품V안전관리V특별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V장려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V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V기본법
실종아동등의V보호V및V지원에V관한V법률	실종아동V등의V보호V및V지원에V관한V법률
아동·청소년의V성보호에V관한V법률	아동·청소년의V성V보호에V관한V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V기본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V보호법
여성기업지원에V관한V법률	여성기업V지원에V관한V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영상V진흥V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V보육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V보호법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현행	권고안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 발전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援護財産特別處理法	원호재산 특별처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 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 진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 등록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 관리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 촉진법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조경 진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 진흥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현행	권고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2) 법령문의 띄어쓰기

정비기준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 용어는 당연히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가)~다)에 따른다.

- 이름이 아닌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문 규정의 허용 규정에 따라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문 규정의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가) 띄어 쓰는 경우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어 쓴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V이 법

 각V조, 각V항, 각V호, 각V목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³⁰⁾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V조, 각V항, 각V호, 각V목
- 다만, 가목(目), 나목(目) 등은 ‘제1조’, ‘제1항’, ‘제1호’ 등을 붙여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목’, ‘나목’처럼 붙여 쓴다.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동목 → 같은V법, 같은V조, 같은V항, 같은V호, 같은V목

- 관형사 ‘동(同)’은 ‘같은’으로 정비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같은 목’으로 쓴다.

 본법, 본장, 본조 → 이V법, 이V장, 이V조

- 관형사 ‘본(本)’은 ‘이’로 바꾸어 ‘이 법, 이 장, 이 조’로 쓴다.

 V강제징수, V체납처분³¹⁾

- 법령용어나 전문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구로서 띄어 쓰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용어는 띄어 쓴다.

국세V강제징수 지방세V체납처분

 아니V된다, 안V된다, 아니하다

- ‘아니V된다’, ‘안V된다’는 ‘아니’, ‘안’과 다음 글자를 띄어 써야 한다. ‘아니’와 ‘안’은 부사이고 ‘되다’는 동사여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 ‘~하지 아니하다’에서와 같이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아니하다’는 ‘않다’의 본딧말로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30) 표준국어대사전에 ‘각항(各項)’이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으나 ‘각기 다른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법령에서 ‘각 항’은 조(條) 아래의 낱말의 항(項)을 가리키므로 법령의 관용대로 띄어 쓴다.

31) 국세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사용하고, 지방세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사용한다.

💡 -용ㅍ

- ‘-용(用)’ 다음은 띄어 쓴다.

공사용ㅍ건축물

💡 ㅍ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령용어이고 ‘유효기간’이 포함된 명사구를 띄어 쓰더라도 혼선의 소지가 적으므로 띄어 쓴다.

어업면허ㅍ유효기간

💡 ㅍ안, ㅍ밖, ㅍ전, ㅍ후, ㅍ이상, ㅍ이하, ㅍ미만, ㅍ이내, ㅍ이전, ㅍ이후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학교ㅍ안에서, 자연공원ㅍ밖, 이 법 시행ㅍ전, 합병ㅍ후, 10년ㅍ이상, 5년ㅍ이하,
3개월ㅍ미만, 1년ㅍ이내, 2015년 4월 1일ㅍ이전, 2010년 5월 2일ㅍ이후

- ‘지체 없이’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보관금 출금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ㅍ없이** 법원보관금 출금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 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4조제2항) ※권고안

 **의존명사 ‘v시’**

- ‘시’는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라는 뜻의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등)

→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v시의 제출서류 등)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제목)

- 그러나 ‘비상시’, ‘평상시’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사용되는 단어는 붙여 쓴다.


비상시, 필요시, 유사시, 평상시, 혼잡시, 일출시, 일몰시

 **의존명사 ‘v중, v내, v외’**

-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관계 전문가v중, 기일v내, 규정된 사항v외

 **붙여쓰기를 허용하는 경우**

 **정의, 약칭**

- 법령문의 ‘정의’나 ‘약칭’은 법령 내에서 구별하기 쉽도록 붙여 쓸 수 있다.
-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나 어구에 대해 그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 두는 입법기술의 한 방식이다.
- ‘약칭’은 하나의 법령 내에서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특정 내용이나 대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하는 입법기술의 한 방식이다.
-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거나 약칭한 용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띄어쓰기에 따른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건축법」 제4조제1항)

- 의존명사 ‘등’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은 두 가지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뜻과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 법령의 정의나 약칭에서 주로 쓰는 ‘등’은 두 번째 의미로 쓴 것이다. 그러나 법령문뿐만 아니라 일반 문장에서도 두 가지의 다른 ‘등’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에 쓰는 ‘등’은 그것만으로 한정하는 ‘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관, 단체

-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축산업협동조합, 한국마사회,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

~시설, ~사업, ~계약, ~계획, 직종 등의 이름

-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쓸 수 있다.
 - ▶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 등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경우, 즉 노인복지시설, 가맹계약, 노인복지상담원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로서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서 일정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의미가 한정됨
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의미가 한정됨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의미함

나) 붙여 쓰는 경우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쓴다.

제2조(정의)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를 서로 붙여 쓰고, '가지번호'도 붙여 쓴다.

- 제△조제△항제△호△목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제5조의3(○)
제5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5조의 3(×)

※ 조, 항, 호 목의 번호는 하나의 명칭 또는 의미단위이므로 붙여 쓴다.

제5조제2항제4호가목

 행정처분


- 하나의 법률행위나 행정처분은 붙여 써도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보기 쉽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허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변경허가,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중지명령, 착공신고, 폐쇄명령, 행정처분

 장관 직책

- '기관 이름'과 '장관 직책'은 붙여 쓴다.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V장관(×)

 장 제목

- 법령문에서 '장 제목'은 글자 간격을 벌리지 않고 붙여 쓴다.

제 1 장 총 칙 → 제1장 총칙
제 9 장 벌 칙 → 제9장 벌칙

💡 게을리하다

- ‘게을리하다’는 부사 ‘게을리’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것이므로 ‘게을리하다’로 붙여 쓴다.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등과 같다.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게을리하다(○)
게을리V하다(×)

💡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 하나의 낱말로 국어사전에 실려 있으므로 붙여 쓴다.

💡 접미사 ‘-당’

- (수, 단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마리당 삼천원, 시간당 얼마, 40명당

💡 접미사 ‘-별’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능력별, 성별, 월별, 직업별, 학년별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국회방청규칙」 제5조) ※권고안

💡 접미사 ‘-상’

- ‘앞말과 관계된 입장’ 또는 ‘앞말에 따름’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외관상, 절차상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인터넷상, 통신상

 **접미사 '-하'**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식민지하, 원칙하, 지도하, 지배하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40조제1항)

 **단위명사**


- 숫자 뒤에 쓰는 단위명사는 숫자와 붙여 쓴다.

12억3456만7500원 (○) 3억5천만원 (○) 5만2천미터 (○) 700미터 (○)

※ 어문 규정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거나 단위명사가 아라비아숫자 뒤에 붙을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금액 등을 적을 때에는 번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법령문에서는 숫자와 단위 명사를 띄어 쓰지 않고 모두 붙여 쓴다.

다) 띄어 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의 구분

-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접미사와 어미는 붙여 쓴다.

 **의존명사 '간'과 접미사 '간'**

- 의존명사 '√간'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를 뜻하거나,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간'은 띄어 쓴다.

(대상의 사이) 서울과 부산[∨]간
(관계) 부모와 자식[∨]간

- 다만 '간'이 앞말과 함께 한 단어로 굳어진 예들은 붙여 쓴다.

국제^간, 다자^간, 피자^간, 고부^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동기^간, 천지^간

• 접미사 '-간'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경우에 따라 '간'은 '동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틀^간, 한 달^간, 삼십 일^간
이틀[∨]동안

의존명사 '데'와 연결어미 '데'

• 의존명사 '∨데'

- '데'가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데에'에서 '에'를 생략할 수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

※ '데' 뒤에 '에' 등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

• 연결어미 '-는데/-는데/-는데'

-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는데, -는데, -는데'의 '데'는 앞말에 붙여 쓴다.

없는데, 가는데, 사는데

💡 의존명사 '바'와 연결어미 '바'

• 의존명사 'ㅂ바'

-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방법, 일, 것' 등에 가까운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의존명사는 체언이므로 조사 '에', '의' 등이 결합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ㅂ바에 따라

• 연결어미 '-ㄴ바/-은바/-는바'

- '-ㄴ바, -은바/-는바'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어미이므로 어미의 일부인 '바'를 앞말에 붙여 쓴다.
- 주로 '-ㄴ데', '-니' 따위에 가까운 뜻을 지닌다. 고어 투의 문어체 표현으로, 보고서 등 공문서에 자주 사용되나 되도록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검토했바(=검토했으니), 정해진바(=정해졌으므로, 정해졌는데),
실시되는바(=실시되므로, 실시되는데), 들은바(=들어보니), 읽은바(=읽어보니)

💡 의존명사 '지'와 연결어미 '지'

• 의존명사 'ㅂ지'

-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를 나타내는 뜻으로 쓸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ㅂ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 '지'를 비슷한 의미의 명사인 '시간'이나 '기간'으로 바꾸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띄어 쓴다.

• 연결어미 '-ㄴ지/-은지/-는지'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이어지는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에 사용될 때에는 연결어미이므로 어미의 일부인 '지'를 앞말에 붙여 쓴다.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나. 두음법칙

- 두음법칙이란 단어의 첫소리에 ‘ㄴ’이나 ‘ㄹ’이 올 수 없는 음운법칙을 말한다.

💡 년, 연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첫머리에 오면,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예
년월일 → 연월일

- 합성어는 아니지만 두 단어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에는 두 단어가 결합되기 전의 형태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예

경과년수		경과연수
내용년수		내용연수(耐用年數)
승인년도	→	승인연도
제조년월일		제조연월일
회계년도		회계연도

※ ‘전년도’는 ‘전년+도(접미사)’의 구성이므로 두음법칙과 상관없이 ‘전년도’로 쓴다.

💡 리

-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리(里), 리(理)
- 구역을 나타내는 ‘리(里)’를 두음법칙에 따라 ‘이’로 쓰면 대명사 ‘이’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동·리’ 또는 ‘리’로 쓴다.

예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4항)

※ ‘동·리’ 또는 ‘리’로 쓰더라도 ‘리’의 장(長)은 ‘이장’으로 쓴다.

-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리(理)’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그럴 리가 없다.

 열/울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는 ‘열, 울’로 적고, 그 밖에는 ‘렬, 룰’로 적는다.

예
열/울: 나열, 비율, 선율, 전율, 백분율
렬/룰: 확률, 유량변동률

다. 문장부호³²⁾

1)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가운뎃점³³⁾을 사용한다.
- 예: 지정·공고, 조사·연구, 조사·심의, 지도·감독, 위법·부당, 기록·유지, 설치·운영, 유지·관리, 부과·징수 등
- ‘A, B·C, D 및/또는 E’ 처럼 입법기술 면에서 쉽표(.)와 가운뎃점(·)이 혼용된 경우에도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가운뎃점을 ‘와, 과, 나, 이나’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

- 두 단어 사이의 가운뎃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관리에 필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구축하여 운영할
→ 구축·운영할

※ 연결되는 사항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가운뎃점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

32) 문장부호의 자세한 쓰임은 한글 맞춤법 부록(이 책 제259쪽)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법령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부호의 사용법에 대해서만 살핀다.
33) 법령에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에는 훈글(HNC)문자표 HNC코드번호가 ‘357D’[전각 기호(일반)]인 가운뎃점을 쓴다. 문자표 맨 밑의 오른쪽에 있다.

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세 개 이상 단어나 구절 사이의 가운뎃점


- ‘A·B 또는 C’의 경우 셋 중 선택임을 뜻하나, A는 당연히 포함되고 B와 C 중 선택적으로 하나가 더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으면 ‘A나 B 또는 C’로 열거하거나 각 호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한다.

예

• A·B 및 C	→	• A, B 및 C	• A, B 또는 C
		• A와 B 및 C	• A나 B 또는 C
		• A·B 및 C	• A·B 또는 C

- 다음 예시를 보면, 가운뎃점을 써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형태’라는 점이 명확하다. 이렇게 수식관계에서 ‘건축물의’가 어디까지 수식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낼 때에는 쉼표보다는 가운뎃점이 시각적으로 유리하다.

예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

- 구나 절을 연결하는 경우: 띄어져 있는 구(句)인 ‘주무기관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가운뎃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예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사무소이전·개업·휴업 및 폐업 → 사무소V이전, 개업, 휴업 및 폐업



-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아우르는 말이나 가운데점을 사용할 경우 앞뒤로 하여 ‘직계존’과 ‘비속’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직계존비속’으로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직계 존속·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풀어 쓴다.

예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직계 존속·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운데점의 적절한 사용**


- 가운데점 사용 시 문맥을 보아 의미 단위로 묶어 주어야 한다.
-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이라는 의미이므로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가운데점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경우**

- 다음 사례는 가운데점과 ‘및’, ‘또는’이 한꺼번에 쓰인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 가운데점(·)을 사용하면서 줄여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절약되는 음절이 대부분 한두 음절 정도에 불과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되도록 줄여 쓰지 않고 정확하게 모두 표기한다.

예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

 **가운데점이 필요 없는 경우**

- 한 단어로 굳어진 용어는 가운데점 없이 붙여 쓴다. 한 단어인지 아닌지는 국어사전 등재 여부로 알 수 있다.

✓ 한 단어로 굳어진 용어 목록

대상 용어	정비 용어	대상 용어	정비 용어
국·공립	국공립	인수·인계	인수인계
국내·외	국내외	임·직원	임직원
송·수신	송수신	천재·지변	천재지변
수·출입	수출입	총·포	총포
신·구	신구	출·입구	출입구, 출입문
어·패류	어패류	통·폐합	통폐합

2) 쉼표

- 어구를 열거할 때에는 쉼표를 쓴다.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결과의 확인, 최종 성과의 종합

- 절과 절 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예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 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건축법」 제4조의4제2항)

💬 가운뎃점과 쉼표의 구분

-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쉼표를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별 단어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예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3) 마침표

- 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일 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둘 이상일 때에는 맨 마지막 문장에만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쌍점

- 쌍점(:)은 어문 규정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쓴다.

예
 제6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제1항제6호)

- 용어 뒤 괄호 안에 해당 용어의 원어나 한자어를 쓰고 뜻을 적을 경우 그 원어나 한자어 뒤에 쌍점을 쓴다.

예
 Colles → 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손목 관절의 2.5cm 이내 노뼈의 아래 끝 골절)
 계대배양(繼代培養) → 계대배양[繼代培養: 세포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 세포의 대(代)를 이어 배양하는 방법]

5) 큰따옴표

- 법령문에서 큰따옴표(“ ”)는 주로 정의하는 용어나 약칭에 사용한다.
- 정의나 약칭 뒤에 한자나 원어를 괄호에 병기할 때 큰따옴표는 한글 용어에만 하기로 한다.

예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
 “사업주”(事業主)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권고안

6) 괄호

- 법령문에서 괄호는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데, 주로 소괄호(())를 쓴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는 대괄호를 사용하고, 안쪽의 괄호는 소괄호를 사용한다.
예) 큰아버지[백부(伯父)]
 -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예) 나이[年歲]

예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복시**가 있는 사람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검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副鼻洞)**암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결골[부비동(副鼻洞)]**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예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눈피해[雪害]**·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